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조제5항의 단서중 “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제8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 시설(이하 “일시급수”라 한다)을 제외한 전용 급수장치를 신설하거나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p>	<p>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대상자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입급수관의 구경만을 확대하는 경우 : 건축허가 등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시에 납부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8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p>	
[별표 1]		
시 설 분 담 금 액 표(제11조 관련)		
구 분	신 설	구 경 확 대
내경 15mm	257,000원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 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의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내경 20mm	693,000원	
내경 25mm	1,231,000원	
내경 30mm	2,231,000원	
내경 40mm	3,770,000원	
내경 50mm	6,001,000원	
내경 65mm	9,220,500원	
내경 80mm	12,440,000원	
내경 100mm	21,234,000원	
내경 125mm	33,736,000원	
내경 150mm	46,238,000원	
내경 200mm	65,651,000원	
내경 250mm	88,626,000원	
내경 300mm	110,594,000원	
내경 350mm	138,996,000원	
내경 400mm	186,310,000원	
<p>※ 내경 구분은 인입급수관공칭 구경을 기준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구경은 15mm구경을 적용한다.</p>		